

※ 교섭요구안은 합의서가 아닌 경북교사노동조합의 요구안입니다.
의견 수렴 후 도교육청과 경북교사노동조합이 실무교섭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경북교사노동조합 – 경상북도교육청

단체협약서

2020. 8. 13.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

전 문

경북교사노동조합(이하 "경북교사노조"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 그리고 경북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도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북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북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도교육청은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 ③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불이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도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람·게시·연수를 통하여 전교원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이나 대의원대회 (연1회에 한정)에 참석하는 경우 공가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부지급 출장을 허가하도록 한다.
 - 가.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시 배석자로 참관
 - 나.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정책협의회
 - 다. 경북교사노조 집행위원회, 부서장회의

라.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 ⑥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직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⑦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밖에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⑧ 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경북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도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⑩ 도교육청은 1정연수 및 신규 임용자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30분 내외의 경북교사노조 홍보 시간을 부여하고, 소개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 ①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6조 【경북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 ① 도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도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강사와 강의내용에 관해 경북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8조 【시설 편의제공】

- ①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운영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가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한다.

제9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 ①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가 노조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과 경북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가.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 1)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 2)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
- 3)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공문
- 4)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 5)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
- 6)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

나. 경북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 1) 규약의 변경사항
- 2) 경북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 3) 경북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간행물

③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와 정책협의회(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 및 협의) 시 상호발언을 기록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경북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회신요구가 있을 경우 회신하도록 한다.

제10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교육청과 경북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경북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는 분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나.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2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의 안건은 상호 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11조 【교원평가 제도 개선】

①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급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전액 교원보수 및 수당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관련자를 지도·감독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주관식) 문항의 평가내용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4장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

제12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복무 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도록 지도·감독한다.
가. 연가 및 조퇴 사용시 결재권자가 대면보고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도교육청은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③ 도교육청은 보결수업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교사가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1일 이상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담당학교를 순회하여 보결수업 교사의 담임업무와 수업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상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결수업을 하는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⑤ 도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3조 【근로 및 휴게시간】

- ① 도교육청은 교사의 근무는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근무는 근무 당사자와 민주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통상적인 업무로 교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유연근무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 ③ 도교육청은 교사의 방학 중 근무방식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도교육청은 천재지변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온라인수업을 운영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 재학하는 자녀를 둔 교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14조 【특성화 고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①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체제 개편, 학과개편 등 주요정책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연구용역 시 경북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학과 개편을 지양한다.
- ② 도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특수분야 산업체 연수를 포함한 개별연수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 ③ 도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원칙적으로 개인별 수업시수에 포함되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일부 누락된 전문교과 과목의 실과교원 가산금 책정 등 전문교과 교사의 근무

여건 및 복지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 조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⑤ 전문교과의 상치과목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배치를 지양하고 전문교과 임용을 확대하여 교원수급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 ⑥ 도교육청은 관행적인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교육청 주관 각종 학생 참가대회에 의무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5조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①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연수과정 계획 시 경북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②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단위학교 업무기준안의 학교보건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마련한다.
- ③ 도교육청은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따라 관련 업무가 학교에서 역할 분담이 되도록 지도 한다.

제16조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급식업무를 담당할 파견 영양교사를 배치해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원활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가. 본청 근무 영양교육 전문직원 임기를 5년으로하고 교육지원청 파견 영양교사를 포함, 경주, 안동, 구미, 경산 등 시 단위 우선으로 추가 배치해 나간다.
- ②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법상 학교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 ③ 도교육청은 수업일 중식 이외 1일 2식 이상,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의 효율적 업무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방학 중(휴업일)에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사서교사의 근무지 외 연수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유치원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 ①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행정 업무 경감과 업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과 교육 업무 결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결수업 지원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 ③ 방학 중 계절유치원 운영 시 정교사에게 운영 의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유치원 정교사의 41조 연수를 보장하기 위해 계절유치원 전담강사를 채용하여 계절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특수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 ① 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1급 정교사 연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격연수, 희소교과의 전국 단위 연수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②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③ 도교육청은 특수보결강사 인원을 확충하여 각 급별 학교의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 휴가 등을 갈 경우 특수보결강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 특수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승진가산점, 전보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제공, 유연근무제 인정 등)
- ⑤ 도교육청은 순회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순회교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순회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도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⑦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에 적극 노력한다.
- ⑧ 도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학교업무의 정상화

제20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 ① 교원인사제도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도교육청은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동료직원 평가단 구성 시, 학교내의 특정 직에 대해 필수포함 비율을 강제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 가.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나.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 다.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도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제22조 【전보 제도】

- ① 도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업무정상화】

- ① 도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 ② 도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기타 장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청(지원청) 부서 및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 ③ 도교육청은 정보보안지침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가. 학교현장에서 이동식저장장치를 최초 등록 후 최소 1년간 별도의 로그인 및 비밀번호 입력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정보화 물품의 구입·유지·폐기, 학교유무선망 및 CCTV 관리와 같은 시설관리, 재난대응 대피훈련, 배움터 지킴이 관리, 안전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도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교육급여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⑥ 도교육청은 국회·도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 ⑦ 도교육청은 한 학교에 2급 정교사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2급 정교사가 원치 않을 경우 보직교사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고 청소년단체 업무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한다.
- ⑨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 업무메일을 통한 공문 발송 및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제24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교권전문강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경북교사노조의 조사요구가 있을 시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④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 ⑤ 교육활동 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이를 지도하고 시행하는 전담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⑥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인권침해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자체 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 ⑦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5조 【보건교육의 정상화】

- ① 도교육청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교육실을 보건실 근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② 도교육청은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 ③ 도교육청은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학교 특성 및 교육 정도에 따라 보건교육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일괄적인 시수 기준(17차시)을 지양한다.

제26조 【영양교육의 정상화】

- ①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폐교를 활용한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한다.

제27조 【특수교육의 정상화】

- ①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의거 정해진 학급 당 학생 정원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통합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기적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시 별도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 ③ 도교육청은 영유아기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 장애영아 교육기관 신증설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안내, 교육기관 안내 및 교육활동 홍보 등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 ④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원격수업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스쿨포유)에 기본교육과정과 중증 장애학생들의 콘텐츠를 개발, 탑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가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⑥ 도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19.)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⑦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제28조 【유치원교육의 정상화】

- ① 도교육청은 교육대상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유아 출결 및 생활기록부를 처리할 수 있는 나이스 전산망을 정비하여 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가. 공립유치원 교원의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 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초등학교 신설 시 유치원을 병설하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협의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치원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리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6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①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한다.

제30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 ① 도교육청은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제31조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 ① 도교육청은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② 도교육청은 중등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계약관리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제7장 교권 및 후생복지

제32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①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도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관

리자 뿐 아니라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소송 진행 등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⑥ 도교육청은 (가칭) 교권관련 정책협의회에 경북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 ①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박물관, 미술관, 고궁, 왕릉 등 문화 공간 입장 시 교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학년 초 그 혜택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제34조 【교원의 후생복지】

- ①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도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 진단 항목에 성인병 (4대암 등)이 포함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 ③ 도교육청은 교원의 건강검진 추가지원 한도 금액과 연령을 확대하도록 한다.
- ④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⑤ 도교육청은 인후염,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어려운 교사를 위해 수업용 무선 마이크 및 스피커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도교육청은 교원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종합 복지 휴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⑦ 도교육청은 출산을 하거나 예정인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⑧ 도교육청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에 대해서 학년초에 교사에게 안내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35조 【학급운영비】

- ① 학교예산 중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편성되도록 지도한다.

제36조 【체육복 및 실습복】

- ① 도교육청은 체육(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 【협약갱신】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이행계획서 작성】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경북교사노조와 의견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제외)에 배포한다.

제 5 조 【이행방법】

- ① 경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은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 ② 경북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 하도록 지도한다.
- ③ 도교육청은 연 1회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경북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도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